

제 5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

제9조 (이용계약) : 본 센터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1) 계약기간: 본 센터의 계약기간은 최초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기간 만료일까지 이며, 기간만료 갱신 시 자동 연장하여 재계약을 통해 이용 한다.
- 2) 계약목적: 본 센터의 이용에 있어 제공 되어지는 각종 서비스 및 프로그램들에 있어서의 불이행 및 불만 등에 대한 보상 및 보장 근거마련을 목적으로 한다.
- 3) 이 용 료: 본 센터의 이용료는 제 10조를 기본으로 한다.

제10조 (비용부담에 관한 사항) : 본 센터의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

- 1) 주야간서비스 월 이용료 (이 규정은 2024년 1월1일부터 개정한다.)

 * 등급판정자 (8시간기준)

1등급	66,360원(1일) × 월별일수 × 15% or 9% or 6%(개인부담분)
2등급	61,480원(1일) × 월별일수 × 15% or 9% or 6%(개인부담분)
3등급	56,760원(1일) × 월별일수 × 15% or 9% or 6%(개인부담분)
4등급	55,210원(1일) × 월별일수 × 15% or 9% or 6%(개인부담분)
5등급	53,640원(1일) × 월별일수 × 15% or 9% or 6%(개인부담분)
6등급	53,640원(1일) × 월별일수 × 15% or 9% or 6%(개인부담분)
<비급여 항목 - 식비, 간식> 4,500원 × 월별일수	

*기초생활수급권자는 이용료가 무료이며 비급여(식비,간식)는 비용부담한다.

*저녁식사 시 식비는 3,000원으로 비용부담한다.(2024.01.01. 신설)

 * 등급의 판정자 (기존 이용자에 한함)

일이용료	정기이용료	비 고
25,000원	500,000원(20일)	차량, 식비 미포함(비급여)

- 2) 방문요양서비스 월 이용료

분류번호	분 류	금액(원)	요 금		
			일반요금(15%)	경감요금(9%)	경감요금(6%)
가-1	30분 이상	16,630	2,490	1,490	990
가-2	60분 이상	24,120	3,610	2,170	1,440
가-3	90분 이상	32,510	4,870	2,920	1,950
가-4	120분 이상	41,380	6,200	3,720	2,480
가-5	150분 이상	48,250	7,230	4,340	2,890
가-6	180분 이상	54,320	8,140	4,880	3,250
가-7	210분 이상	60,530	9,070	5,440	3,630
가-8	240분 이상	66,770	10,010	6,000	4,000

- 3) 적응 기간 동안은 일일이용료로 수납한다. (기초수급자는 면제함)

- 4) 회비 반납관련 내용

- ▶ 등급판정자
- 후불제를 원칙으로 하며, 실 이용일의 금액을 익월에 청구하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한다.
- 이용 종결 시 실 이용일의 금액을 청구한다.

▶ 등급외판정자

- 실제 이용한 날이 15일 이내 일 경우만 가능함.
- 연기는 1개월에 한해서만 가능함.
- 한 달 회비 납부 후 연기 희망 시 이용한 일수를 무조건 1일 이용료로 산정(25,000원)한 후 회비를 반납 또는 나머지 부분을 연기할 달 초로 이월 시킨다.
- 청구명세서와 제공기록지는 수급자 가정으로 우편 또는 문자, SNS로 송부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1조 (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)

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)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.

1. 신원인수인의 권리

- 가.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,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.
- 나. 이용자에게 업무범위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.

2. 신원인수인의 의무

- 가.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.
- 나.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다.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.
- 라.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.
- 마.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.

제12조 (계약의 해제 및 절차)

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이다.
2. 대상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
3.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
4.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
5.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,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이다
6.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.
7.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.